

1. 개정 이유

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「자동차관리법」(법률 제19685호, 2023.8.16. 공포, 2025.2.17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
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의 목차에 “13. 구동축전지의 안전성능시험”을 신설하고, 같은 별표 6에 제1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 제13호

13. 구동축전지의 안전성능시험

본 규정은 안전기준 제112조의4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(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에 적용하며, 구동축전지의 안전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가.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: [별표 1] 제48호

나.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: [별표 1] 제48호의2